

제2023-43호 2023년 5월 9일(화)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3-212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3-1401호 2023년도 여수시민의 상 추천·접수 공고 2
- 여수시 공고 제2023-1402호 2023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접수 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3-141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공고 (울촌면 동양엔파트~울촌초등학교) 17
- 여수시 공고 제2023-1432호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1
- 여수시 공고 제2023-1435호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공고 31
- 여수시 공고 제2023-1438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33
- 여수시 공고 제2023-1439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34
- 여수시 공고 제2023-1442호 도로지정 변경공고(화양면 이목리 512번지) 35
- 여수시 공고 제2023-1443호 도로지정 공고(울촌면 신평리 894-27, 900번지) 37
- 여수시 공고 제2023-1444호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39
- 여수시 공고 제2023-1447호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70
- 여수시 공고 제2023-1449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73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고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7-3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5. .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980 201호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47-3 외5필지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7,556.30m²
 - 나. 건축면적 : 4,741.2175m²
 - 다. 연 면 적 : 57,014.7475m²
 - 라. 규 모 : 지하2층·지상39층, 주2동, 291세대
5. 사업기간 : 2023. 5. 31. ~ 2026. 9. 30.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등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과(☎659-4097)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2023년도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추천)

「여수시민의 상 조례」에 의하여 2023년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3. 5. 8. ~ 8. 4.(3개월)

2. 추천기준

가. 여수시의 지역사회와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나.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

3. 대상부문(7개 부문)

가. 지역개발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

나. 산업경제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

다. 교육과학 : 인재양성, 인문사회, 자연, 과학분야

라. 문예홍보 : 전통문화, 예술, 문학, 언론분야

마. 사회복지 : 사회사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

바. 체육진흥 : 체육 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

사. 향토방위 : 향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분야

4. 대상자 추천

가.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여수시장

2) 여수시의회의장

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

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

나. 가항 각호 1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기준

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지역개발부문

- 가)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

2) 산업경제부문

- 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왕성한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 나)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3) 교육과학부문

- 가) 일생을 교육 사업에 헌신하여 향토 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
- 나) 인문, 자연, 사회, 과학 분야에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

4) 문예홍보부문

- 가) 예능이 특출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
- 나) 언론·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여수시의 명예를 널리 선양한 자

5) 사회복지부문

- 가)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인 효행을 숭상·실천하는 효자, 효녀, 효부로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
- 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된 장한 아버지
- 다) 사회봉사 등에 실적이 뚜렷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자

6) 체육진흥부문

- 가) 여수시 출신으로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최고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자
- 나)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육진흥에 공이 현저히 있는 자

7) 향토방위부문

- 가)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향토방위태세 확립에 크게 공헌한 자

나)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 보호 등 사회 안녕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수시민의 상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 5) 동일한 공적으로 연속 3회 이상 추천된 자
- 6)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

※ 뚜렷한 공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 제외

6. 제출서류

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증빙자료 각 2부

나. 사진(6개월 내에 촬영한 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다. 기타 참고자료 1부

7. 접수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7)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8. 시상 : '23. 10월 중(2023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5.

여 수 시 장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p>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등록기준지						
E-mail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고

(「2023년도 자랑스런 여수인」 추천)

「여수시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운영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을 위한 추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추천기간 : '23. 5. 8. ~ 8. 4.(3개월)

2. 선정기준

가. 여수지역 출신 출향인사로 아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여수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인정 되는 자

- 1) 관 계 : 2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 2) 법조계 : 부장급 이상 전·현직 판·검사
- 3) 재 계 : 기업인으로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
- 4) 학 계 :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권위자
- 5) 군 인 : 전·현직 장성
- 6) 체육인 :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
- 7) 문화·예술인 : 유명작가, 배우, 언론인, 기타 예술인 등
- 8) 기타 사회적으로 명성이 뚜렷한 자

나. 제외대상: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대상자 추천 : 시민 누구나 추천 가능

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5.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659-3107)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총무과

6. 제출서류

- 가. 추천서 2부
- 나. 이력서 2부
- 다. 공적조서 2부
- 라.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
- 마.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7. 대상자 선정

- 자랑스런 여수인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8. 시 상 : '23. 10월 중(2023년도 여수시민의 날 기념식)

9.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치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총무과 행정팀(☎659-3107)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3. 5.

여 수 시 장

【붙임2】 추천서식

추천서

<추천대상자>

추천부문		본 적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 업	

상기인은 여수지역 출신으로서 별첨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여수시의 명예를 빛낸 공적이 있기에 자랑스런 여수인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 첨부서류
1. 이력서 2부
 2. 공적조서 2부
 3. 명함판 사진 2매
 4.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2023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직 성명 (인)

여수시장 귀하

이 력 서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등록기준지						
E-mail			전화번호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2023년 월 일

작성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주요경력	
연월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종류
공적내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공 적 내 용

(공적내용 상세작성)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4.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여수 도시계획시설 (도로: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울촌초 등학교 도로확장공사)	전남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25-8번지 일원	○ 면적 및 규모 - 면적: 782㎡ - 규모 중로3-25 L=12.5m, B=2m A= 34㎡ 소로1-413 L=100m, B=2m A= 254㎡ 소로1-414 L=139m, B=2m A= 286㎡ 소로1-415 L=12.5m, B=2m A= 208㎡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울촌면 동양엔파트아파트~ 울촌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	여수시 도로과	2023. 5. 4. ~2023. 5. 18.(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5. 4. ~ 2023. 5. 18.(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조서

(중로3-25)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70-6	답	496	34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	조*원				
합계					496	34						

(소로1-413)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70-6	답	496	2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	조*원				
2	울촌	조화	173	대	370	31	서울 관악구 신림동 12*, 2*-30*호	박*웅				
3	울촌	조화	174	답	1,092	38	순천시 조례동 136*, 50*-140*호	채*숙				
4	울촌	조화	175	답	755	26	여수시 미평동 488-*, 30*-30*호	강*준				
5	울촌	조화	175-2	대	430	1	여수시 울촌면 조화리 175-*	유*길				
6	울촌	조화	175-3	답	125	42	순천시 원가곡길 7*, 10*-30*호	박*영				
7	울촌	조화	144-10	전	45	15	-	여수시				
8	울촌	조화	126	답	369	4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9*, 0*-60*호	김*태 외 1인				
9	울촌	조화	127	답	394	26	대구 수성구 공경로 7*, 10*-130*호	이*숙				
합계					4,076	254						

(소로1-414)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31-8	답	214	31	경남 김해시 우암로 10*, 30*동 130*호	임*업				
2	울촌	조화	130	답	553	18	전남 여수시 덕양로 15*, 31*동 30*호	김*현				
3	울촌	조화	131-1	답	198	24	전북 익산시 무왕로 3*길 8*, 10*동 100*호	이*희				
4	울촌	조화	122-7	전	1,266	38	광주 북구 우치로 22*, 3층	제이앤**주식회사				
5	울촌	조화	122-8	전	869	105	여수시 여서동 48*, 30*-80*호	박*정				
6	울촌	조화	125-8	도	2,438	70	-	여수시				
합계					5,538	286						

(소로1415)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읍	리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1	울촌	조화	193-7	답	664	4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2	울촌	조화	201-25	도	1,088	1		여수시				
3	울촌	조화	193-10	답	110	40		여수시				
4	울촌	조화	165-9	답	62	35		여수시				
5	울촌	조화	182	학	16,870	23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감)				
6	울촌	조화	165-5	답	179	17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 1길4*, 10*동 30*호	이*형				
7	울촌	조화	165-12	답	179	35	울산 울주군 언양읍 웃방천 1길4*, 10*동 30*호	이*형				
8	울촌	조화	166-1	답	267	13		황*영 외 29인				
9	울촌	조화	862-6	도	81	4		국				
10	울촌	조화	167	답	433	29	여수시 조화리 7*	조*현				
11	울촌	조화	170-6	답	496	7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서의로 7*	조*원				
합계					20, 429	20 8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지자체 의무화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 조례 반영 필요
- 기존 조례의 장기 경과에 따라 조례 내용 수정 등 전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위임법령 명시 및 목적 등 수정(안 제1조~제3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세분화(안 제4조~제13조)
- 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관련 사항 신규 반영 및 활용 등 내용 수정 반영(안 제14조~제18조)
- 라. 교육·훈련 등 재정 지원 수정(안 제19조~제21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산단환경관리과)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79 허재영정형외과 2층, 산단환경관리과
- 팩 스 : 061-659-2815
- 전자메일 : gogokmh@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산단환경관리과(☎ 061-659-2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여수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여수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여수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2. 제18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점검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 담당국장, 여수소방서 화학사고업무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노동단체 대표 또는 산업계·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마.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시장은 법 제11조2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배출저감 계획서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6.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절차, 대피장소의 관리·점검 및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의 출입통제방법
7.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8.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疏散)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疏散)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2제6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을 위하여 사업장을 출입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가와 동반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 고

여수시 공고 제2023-1435호

「수산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23/202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산업법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

1.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 별첨(도면은 시, 읍, 면 비치 열람)
2. 공고기간 : 2023. 5. 04. ~ 5. 26.
3.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기간 : 2023. 5. 15. ~ 5. 26.(10일간)
4.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서 접수기관 : 여수시 어업생산과
5.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 신청시 구비서류

가.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어업생산과 비치)

나.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수산기술자에 한함)

다.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및 어업허가증

(어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라.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업에 종사한 자에 한함)

마.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법 제13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바. 여권사본(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 공증인 각서(어업면허에 조건이 부여된 경우 공증각서 첨부,

여수시 어업생산과 문의 ☎ 659-3931)

붙임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1부.

2023. 05. 04.

여 수 시 장

2023/2024년 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내역

여수시

(단위 : 건, ha)

어업별	양식방법	품종별	수면 위치	도면 번호	승 인		개발유형	사유(조건)
					건수	면적		
총 계					5	112.40		
마을어업	도수, 나잠	정착성수산 동식물	화양 서촌	1	1	48.00	재개발	10194호(48ha) 기간만료 재개발
마을어업	도수, 나잠	정착성수산 동식물	경호 넓도	2	1	8.00	재개발	10195호(8ha) 기간만료 재개발
마을어업	도수, 나잠	정착성수산 동식물	경호 소경	3	1	29.00	재개발	10196호(29ha) 기간만료 재개발
마을어업	도수, 나잠	정착성수산 동식물	경호 소경	4	1	11.40	재개발	10197호(13ha) 기간만료 재개발(어항시설 1.6ha 축소)
정치망 어업	소형	어류등	남면 우학	5	1	16.00	대체개발	10083호(16ha) 이설(각도변경) 대체개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어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 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10312	2023-22	마을어업	44.50	돌산 평사	2013.07.15. 2023.07.14.	2023.07.15. 2033.07.14.	면제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도실어촌계	
10313	2023-23	마을어업	10.00	삼산 초도	2013.07.15. 2023.07.14.	2023.07.15. 2033.07.14.	면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진막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04.

여 수 시 장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식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11459	2023-24	패류양식 (수하식)	6.50	돌산 울림	2013.07.19. 2023.07.18. (10년)	2023.07.19. 2033.07.18. (10년)	-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울림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04.

여 수 시 장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42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 공고합니다.

2023. 5. 8.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512번지
2. 도로면적: 267m²
3. 도로길이: 41.3m²
4. 도 로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1,651	266	도로대장 참조 (허가과 비치)
변경	계			1,651	267	
당초	화양면 이목리	512	잡	1,651	266	
변경	화양면 이목리	512	잡	1,651	267	

※기존 도로지정 변경공고[여수시 공고 제2022-0056호]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 첨]

현 황 도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894-24번지 외1필지 건축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3. 5. 4.

여 수 시 장

1. 위 치 :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 894-24, 900번지
2. 도로면적 : 174m²
3. 도로길이 : 156m
4. 도 로 폭 : 1.1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7,075	174	
	울촌면 신평리	894-24	과수원	6,159	164	
		900	전	916	1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현황도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따라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공고합니다.

2023. 5. 8.

여 수 시 장 (인)

1. 공 고 명 :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자 모집

2. 사업개요

- 명 칭 :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 운영기간 : 2023. 8. 1. ~ 2025. 7. 31.(위탁일로 부터 2년)
- 운영방법 : 위탁 운영
- 사 업 비 : 10,950백만 원
- 사업규모 : 291개소/36,756명(보육132, 유치원59, 초58, 중26, 고15, 특수 1)
 - * 상기 2023년도 사업비는 참고자료이며, 급식 대상 시설 수·인원 수가 변경 될 수 있고, 급식 대상 시설발주량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될 수 있으며, 2024·2025년도 사업비는 연도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오니 신청 시 이점 주의바랍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61-659-4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품목 : 친환경 농축산물·Non-GMO 식재료
- 역 할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일괄 책임 위탁(급식관련 교육·홍보, 지역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산지 직거래 등 통한 식재료 수급에서 급식 대상시설 납품 과정)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임무 및 신청대상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임무

-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식재료 공급
- 지원 대상기관의 식재료 수요 조사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예정량 파악 비축
-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생산자(단체 포함)와 품목별 납품계약 등으로 지역 생산물 우선 공급 후 전남산 공급
-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유해성분 조사 등 안정성 검사 실시

□ 신청대상

○ 시설 요건

- ① 원물 저온저장 및 출하 전 물건 별도 보관할 저온저장고 * 보유
* 선반, 롤테이너 등이 비치되어 바닥에 제품이 보관되지 않는 보관 창고
- ② 농산물 등 식재료 선별, 세척, 소분, 재포장 등의 처리가 가능한 기계 설비·저온 작업장 보유
- ③ 냉장 운반차량 확보
- ④ (간이)잔류농약 분석기 보유 및 사무실 별도 확보

* “시설 상세 요건” 공모문 [별첨 1]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사 평가표” 참고

○ 자격 요건

- ①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여수시에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
- ② 학교 등 급식 대상 시설 관계자의 식재료 발주 편의를 위한 수발주 전산시스템 * 구축 및 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 식재료 품목 선택 기능, 보조금 사용 잔액 화면 표시, 보조금관련 각종 서류 작성 지원
- ③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필한 법인 또는 단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34조)로 학교급식 포함 집단급식소에 친환경농산물 납품실적이 없어도 신청 가능
- ④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련 단독 회계 및 재무재표 관리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⑤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직거래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조달과 여수산 잉여생산물 판로 확대관련,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2024년부터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판매차익 등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 연계 추진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전남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준수 사항

- ① 전남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 조달 급식 공급 원칙
- ② 직거래 불가한 품목에 한하여 전남 도내 소재한 정부·지자체·「농업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회사」가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유통업체 통한 조달
- ③ 위 “①”, “②” 수집 방법 통한 조달이 불가한 경우만 민간유통업체 조달 허용

* 전남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준수 사항은 위탁 계약일로 부터 적용됨

4. 모집 및 선정개요

- 공고기간 : 2023. 5. 8. ~ 5. 22.(15일 간)
- 접수기간 : 2023. 5. 19. ~ 5. 25.(7일 간)
- 접수처 :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직접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3. 5. 26. ~ 6. 2.(8일 간)
 - * 심사 및 현지실사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운영자 종합 평가 및 선정 : 2023. 6. 15. 전후

- ① 정성평가 : 심의위원 회의 시 사업계획 발표(10분 이내) 및 질의 답변
- ② 선정방법 :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③ 선정결과 : 개별 통지

○ 선정기준(100점)

<p>○ 정량평가 (8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시설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작업실, 소분 재포장 및 선별 장비, 냉장운반 차량, 운영인력, 사무실 확보, (간이)잔류농약 분석기 ◆ 친환경농산물 공급수행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 '22년도 여수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22년도 여수산 친환경 농산물 급식 공급 외 잉여 생산물 매입 실적, '23년도 여수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실적, 계약재배 전담 인력, 자본금 현황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수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상한, 수익률 상한 * 수익률은 운영 수수료(급식 시설 납품가 - 원물 매입가)에 포함 산정 ◆ 사회환원 계획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율 <p>○ 정성평가 (20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운영 체계의 명확성,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식재료 품질 관리 등 신뢰성, 지역 친환경 농가 계약재배(잉여농산물 매입 계획 포함) 확대 및 추진 의지, 사회 환원 방안의 구체성 <p>※ 주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모 신청서 작성 시, “[별첨 1]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사 평가표” 배점 상세 기준 준수 ② 정량 평가 항목 공통 적용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항목 사항 시설 장비 미확보 및 미구비 시, 신청 불가 (신청 반려 대상) - 공모 신청서 작성 시, “수수료 상한, 수익률 상한,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비율” 평가 기준 내 수치로 작성, 미준수 시 신청 불가 (신청 반려 대상)
--

5. 제출서류

-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신청서 1부 ----- (서식 1)
-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 (서식 2)
-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 (서식 3)
- 이행 각서 1부 ----- (서식 4)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비공개입니다.
- 위탁운영자 선정 후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20부 작성 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 인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구비서류 기재 착오·누락 등 서류 미비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 공모 신청 시 첨부 서류 미제출 및 필수 기재 사항 누락할 경우, 신청 접수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미비 사항 보완치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처리됨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에는 재공모하고, 1차 재공모하여 1개소만 신청(공모)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 대해서만 심사합니다.
 - * 재공고 시, “신청자 자격·시설 요건” 확인 기준일, 공모 신청 시점에서 '23. 7. 20. 까지로 완화 또는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모 기준 변경 심의 후 “신청자 자격·시설 요건” 변경 사항 적용 공모 추진
- 사업내용 및 기타 모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여수시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평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별첨 2] 계약서 등 공모관련 서식은 여수시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내용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061-659-4730)로 문의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여수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끝.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신청서

법인 · 단체 현황	법인 ·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법인(단체) 등록번호			
	연락처			팩스			
주요 시설 · 장비	저온저장 시설	보관 창고	작업장	냉장 탑차	(간이)잔류 농약분석기	기타	종사원
	동 ㎡	동 ㎡	동 ㎡	톤 대	점	종 점	명
법인(단체) 자본금		학교 급식 경험 여부		상한 수수료 · 수익률		사회 환원 계획	
억원		유, 무		별첨		도내산 매출액의 %	여수산 매출액의 %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자 법인 · 단체명:

신청확인 : 법인 · 단체 (대표자)

(법인인감)

여 수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1부.
2.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1부.
3. 이행 각서 1부.

사업신청자 일반현황

□ 기본 현황

- 법인(단체) 명 : (대표자 :)
- 소재지 :
- 법인(단체) 설립근거 :
- 설립일자 :
- 주요목적사업 :
- 자본금 : 금 억 원

□ 주요 시설 및 인증 현황

○ 시설·장비 현황

시설·장비명	위치	동수	면적(m ²),수량	비고

○ 차량 현황

구분	차량번호	소유자	보험기간

○ 인력현황(종사원 명단)

연번	주소	성명	담당업무(○)				근무경력	위생교육 (수료일자)	비고
			배송	작업	사무	기타			
	읍면동까지만 기재								

○ 학교급식 관련 자격 및 인증 현황

인증서명	인증기간	인증기관	비고

□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 (간이)잔류농약 분석기 보유 여부

보유대수	작동여부	설치장소	설치사진
	여, 부		

□ 지역 친환경 농가와의 연계 실적 및 계획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구분	공 급 량(kg)				공 급 액(천원)			
	계	지역산	도내산	타도산	계	지역산	도내산	타도산
2022								
2021								

○ 2023년도 지역 산(여수 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실적

계약재배 농가			품목	인증번호	생 산 계 획 량 (kg)	계 약 물 량 (kg)	비 고
주 소 (읍·면·동까지)	성명	연락처					
계							

□ 신청 자격 및 일반 현황 증빙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정관(단체의 경우 회칙)
4. 사업자등록증
5. 대표자 경력 사항(이력서)
6. 재무재표
7. 시설·장비 현황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8. 차량 현황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
9. 인력 현황관련 종사원 전원 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수료 증명(해당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0. 학교급식 관련 자격증
11.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필증
12.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서
13. 여수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관련 계약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 작성 주의사항 - “1. ~ 4. 필수 기재”

1. 지역 특성 및 사업자 신청 배경

2. 위탁사업기간 동안 사업 관련 사항

가. 인력 확보 계획

나. 식재료 확보 계획

- 연합 단체 구성 공모 신청 시, 구성원 간 구체적 담당 식재료 및 역할 기재

- 여수산·도내산 구분 식재료 조달 계획 수립

⇒ 다음 “전남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 준수 사항” 포함 계획 작성

① 전남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은 직거래 조달 급식 공급 원칙

② 직거래 불가한 품목에 한하여 전남 도내 소재한 정부·지자체·「농업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회사」* 가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유통업체 통한 조달

* 거래 희망 사업자와 “소분 작업 단위, 배송 수수료, 품목 등 실무 협의안” 포함 작성

③ 위 “①, ②” 수집 방법 통한 조달이 불가한 경우만 민간유통업체 조달 허용

- “계약재배 추진”, “학교급식 외 잉여생산물 판매”, “학교급식 납품 규격 미달 수확물 판매” 계획 연계 작성

⇒ 2024년 부터는 직거래 외 도내산 품목 조달과 여수산 잉여생산물 판로 확보 연계관련, 친환경농산물 판매차익 등을 지원하는 「전남도 친환경 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추진 내용 포함

다. 식재료 수·발주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라. 식재료 운송 계획

마. 식재료 위생·안전관리 계획

바. 소비자 만족도 제고 방안

사. 예상 수지 분석서(예산 계획서)

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련 상한 수수료·수익률 상세 기재

자. 비상 대응 계획

- 천재지변, 화재, 질병,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계약 기간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정상 운영이 불가할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지속 추진을 위한 “위탁사업자 자체 비상 대응 계획 수립”
- 급식 납품 식재료 대체 조달·배송 차량 확보·대체 인력 확보 방안 상세 기재
- 지원단 및 연합법인 구성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사업자의 경우, 비상 운영 시 구성 법인별 역할 상세 기재 및 “구성 법인 비상 운영 임무 이행 동의 협약서(임의 서식)” 제출

3. 지역 친환경 농가와의 연계 계획

가. “계약재배 추진”, “학교급식 외 잉여생산물 판매”, “학교급식 납품 규격 미달 수확물 판매” 계획

나.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다. 지역 친환경 농가 대상 협력사업 추진 계획

4. 기 타

가.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률 포함 납부 계획 상세 기재

나. 급식관련 교육, 홍보 추진 계획

확약 이행 각서

본 법인·단체는 2023. 8. 1. 부터 2025. 7. 31. 까지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사업자로 선정 될 경우, 제반 법규와 업무 추진 지침 및 요령을 준수하겠습니다.

공모 시 제출한 신청서 및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공모 사항에 포함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서”대로 여수시와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체결, 계약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신청 시 허위 작성 및 자료 제출, 계약 체결 지연, 계약 사항 및 사업계획 불이행, 허위 친환경농산물·Non-GMO 식재료 공급, 업무추진 지침 위배, 관련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차질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법인·단체는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련 단독 회계 재무재표 관리하여 매년 1월 31일 여수시에 제출하겠으며,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시 상한 수익률은 ()%로 하며, 매출액의 (도내산 , 여수산)%를 여수시에 지정기부금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및 비위 사실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른 대한 고발 조치와 위탁 사업자 지정 취소 등 어떠한 행정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수용하겠습니다.

[붙임]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수수료, 수익률,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률 상세 확약 사항 1부.

위 작성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코자 본 확약 사항 이행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자 법인·단체명 :

제 출 확 인 : 법인·단체명(대표자) (법인인감)

여 수 시 장 귀하

학교급식지원센터 심사 평가표

□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계			80	
친환경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25)	저온저장고	200㎡ 이상	5	5
		200㎡ 미만	3	
	출하 전 저온보관창고	50㎡ 이상	5	5
		50㎡ 미만	3	
	저온작업장	140㎡ 이상	3	3
		140㎡ 미만	1	
	소분·선별관련 시설 장비 구축	3 ~ 5식	3	3
		2 ~ 3식	1	
	냉장운반 차량	5대 이상	3	3
		5대 미만	1	
	운영인력	10인 이상	2	2
		10인 미만	1	
	사무실 확보	33㎡ 이상	2	2
		33㎡ 미만	1	
	잔류농약분석기	자체 관리 운영	2	2
외부 지원 운영		1		
* 1개 항목이라도 미확보 및 미구비 시, 신청 불가 (신청 반려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 수행능력 (30)	'21 ~ '22년도 여수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50억 이상	10	10
		30억 이상 50억 미만	5	
		30억 미만	2	
	'22년도 여수산 친환경 농산물 급식 납품 외 잉여 생산물 매입 실적	10억 이상	10	10
		10억 이상 5억 미만	5	
		5억 미만	2	
	'23년도 계약재배 실적	품목 30종 이상 또는 수량 300톤 이상	5	5
		품목 30종 미만 또는 수량 300톤 미만	2	
	계약재배 전담 인력	2명 이상	3	3
		1명	1	
	자본금 현황	10억 이상	2	2
		1억 이상 10억 미만	1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점	
학교 급식 지원 센터 운영 수수 료 (20)	① 여수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15% 상한	15	20	
	② 여수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 (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5% 상한			
	③ 도내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15% 상한			
	④ 도내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5% 상한			
	① 여수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18% 상한	10		
	② 여수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 (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8% 상한			
	③ 도내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18% 상한			
	④ 도내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 (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8% 상한			
	① 여수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20% 상한	5		
	② 여수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 (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10% 상한			
	③ 도내산 소분 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소분 O, 장기 저온저장 O), 납품가의 20% 상한			
	④ 도내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온 저장 품목 (소분 X, 장기 저온저장 X), 납품가의 10% 상한			
	수익률 상 한 (5)	납품가의 1.0% 이상 ~ 1.5% 미만		5
		납품가의 1.5% 이상 ~ 2.0% 미만		3
		납품가의 2.0% 이상 ~ 3.0% 미만		2
<p>(① 기준 상세 설명) 여수산 소분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 (대표품목) 양파, 감자, 당근, 통무, 건고추 등</p> <p>(② 기준 상세 설명) 여수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장 품목 - 방울토마토, 토마토, 참외, 오이, 복숭아, 레몬, 블루베리, 콩나물, 숙주나물, 절임배추, 찐 옥수수, 청국장류 - 농가에서 소포장해서 납품되는 곡류(여천농협 공급 유기농 쌀 제외)·잡곡·두류·유지류·채소류·버섯류(생표고, 느타리버섯)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대상 시설의 발주 요구에 따라, 농가 납품 소포장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재포장하는 물량이, 농가 소포장 납품 물량의 20% 이하인 경우도 이에 해당 - 여수산 Non-GMO 식재료</p>				

(③ 기준 상세 설명) 도내산 소분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 도내 농가 또는 농산물 생산 법인과 직거래 수집한 품목
- * (대표품목) 양파, 감자, 당근, 통무, 건고추 등

(④ 기준 상세 설명) 도내산 소분 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장 품목

- 유통업체 통하여 소분작업 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품목
- * (대표품목) 청경채, 아욱, 썩갓 등 신선 업체류
- 도내산 및 타도산 Non-GMO 식재료

* (수익률 기준) 수익률은 운영 수수료(급식 시설 납품가 - 원물 매입가)에 포함 산정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비율 (5)	도 내 산	매출액의 2.5% 이상 ~ 3.5% 이하	5	5	
		매출액의 1.5% 이상 ~ 2.5% 미만	3		
		매출액의 1.0% 이상 ~ 1.5% 미만	1		
	* 여수산 식재료 사회 환원 기부금 적립 비율 : _____%				

* 평가 항목 공통 적용 사항

- 평가 항목 사항 시설 장비 미확보 및 미구비 시, 신청 불가 (신청 반려 대상)
- 공모 신청서 작성 시, “수수료 상한, 수익률 상한, 사회환원 기부금 적립 비율” 평가 기준 내 수치로 작성, 미준수 시 신청 불가 (신청 반려 대상)

□ 정성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계	20					
• 사업 운영 체계의 명확성	5	5	4	3	2	
•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5	5	4	3	2	
• 식재료 품질 관리 등 신뢰성	5	5	4	3	2	
• 지역 친환경 농가 계약재배(잉여농산물 매입 포함) 확대 및 추진 의지	5	5	4	3	2	
• 사회 환원 방안의 구체성	5	5	4	3	2	

[별첨 2]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계약서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공급계약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여수시를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공급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추진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자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양질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등 식재료를 "을"로 하여금 공급 하고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지원대상자"란 "갑"이 추진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업비를 지원받는 "각 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②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 가공식품으로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제품, 친환경농산물,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인증축산물(등외 등급제품은 공급 불가), 등급 유기농 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 한 가공식품,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단, 장류·발효식품에 한함)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에 의한 식재료 공급 기간은 2023. 8. 1. 부터 ~ 2025. 7. 31. 까지로 하고,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에 별도 통보 없이 종료한다.

제4조(식재료 취급범위) 각 급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에 공급하는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Non-GMO 식재료 등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의·결정 품목 포함)에 한한다.

제5조(공급대상)

- ① 공급대상은 여수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Non-GMO 식재료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 한다.
- ② "을"은 지원대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공급계약 체결일시와 학교 등의 명칭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기간 중 "갑"이 "을"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을"이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한 식재료의 정산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한다.

제7조(납품일시 및 장소) "갑"이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상자가 "을"에게 별도로 지시한 일시·장소에 공급할 식재료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료 공급 시 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여야 하며, 우리 지역 생산농가와 계약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의 80% 이상은 책임지고 수매·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지원대상자가 공급 요청한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기준에 적합한 품질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간은 지원대상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을"은 "갑"이 공급 요청한 식재료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이 없을 경우에는 전남도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유통 수수료"와 "급식 납품단가" 인하를 위하여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중 도내 소재한 정부·지자체·「농업협동조합법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회사」가 운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유통업체로부터 납품이 가능한 품목은 이를 통한 조달하고 이 유통과정 및 직거래가 어려운 경우만 민간유통업체 조달을 허용한다.
 - 2024년 부터는 직거래 외 도내산 품목 조달과 여수산 잉여생산물 판로 확보 연계관련, 친환경농산물 판매차익 등을 지원하는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에 참여 추진한다.
 - 전남도 내에도 없을 경우 "갑"의 사전 승인 후 타 시도 친환경농산물 *을 공급할 수 있다.
4. "을"은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계약내역을 "을"의 급식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계약재배 현황 및 변동 상황을 분기 말까지 "갑"에게 제출

* 참외, 귤, 만감류, 양송이와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콩나물·숙주나물 포함

- [붙임 3]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 단가 결정용 자료 제출 서식에 매입처 정보 필수 기재

하여야 한다.

5. 식재료의 공급 도중 사고 등의 사유로 지체되거나 해당 식재료를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발생 즉시 "을"은 즉시 "갑"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하여야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납품 시 냉동·냉장을 요하는 농산물은 반드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단가)

- ① "을"은 매월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품목별 단가 이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해야 한다.
- ② "을"은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 단가 결정용 자료는 품목별 원산지(여수산, 도내산, 타도산), 저장기간(저온저장 기간 30일 기준), 소분작업 유무 등을 구분하여 "[붙임 3] 서식"으로 작성 제출한다.
- [식재료 수수료 적용 기준]

원산지·저장 기간 구분	수수료
여수산 소분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 (대표품목) 양파, 감자, 당근, 통무, 건고추 등	납품가의 ___% 이하
여수산 소분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장 품목 - (대표품목) 방울토마토, 토마토, 참외, 오이, 복숭아, 레몬, 블루베리, 콩나물, 숙주나물, 절임배추, 찐옥수수, 청국장류 - (대표품목) 농가가 소포장해서 납품되는 곡류(여천농협 공급 유기농 쌀 제외)·잡곡·두류·유지류·채소류·버섯류(생표고, 느타리버섯) *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대상 시설의 발주 요구에 따라, 농가 납품 소포장보다 더 작은 단위로 재포장하는 물량이, 농가 소포장 납품 물량의 20% 이하인 경우도 해당 - 여수산 Non-GMO 식재료	납품가의 ___% 이하

원산지·저장 기간 구분	수수료
도내산 소분작업 필요 또는 30일 이상 장기 저온저장 품목 - 도내 농가 또는 농산물 생산 법인과 직거래 수집한 품목 * (대표품목) 양파, 감자, 당근, 통무, 건고추 등	납품가의 ___% 이하
도내산 소분작업 없이, 단기 저온저장 품목 - 유통업체 통하여 소분작업 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되는 품목 * (대표품목) 청경채, 아욱, 썩갓 등 신선 업체류 - 도내산 및 타도산 Non-GMO 식재료	납품가의 ___% 이하

* 원산지·저장 기간 구분 적용이 어려운 품목은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 납품 단가 결정 시, 적용 기준 결정

- [수익률] 납품가의 ___%

* 수익금은 운영 수수료 (급식 시설 납품가 - 원물 매입가)에 포함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물품의 결정가격이 전남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을 경우에 한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단가가 결정된 식재료의 가격변동이 2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 검수)

- ① "을"은 식재료를 납품할 때 지원대상자로부터 반드시 검사,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검수에 합격한 식재료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 ② 지원대상자로부터 검사, 검수에서 불합격한 식재료는 지원대상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지원대상자에게 납품한 본 제품이 검수의 통지가 있었거나 검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대상자가 숨겨진 하자를 확인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품질 및 안전성 확보)

- ① "을"은 식재료를 공급함에 있어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무실 및 작업장 등과 별도로 분리된 검사실과 잔류농약 속성검사 장비 일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을"은 납품대상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대해 매일 7가지 이상의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월별로 편철 보관하고, 월별 검사결과를 집계하여 매월 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필요 시 수시 검사 품목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문기관을 통한 식재료의 품위 및 잔류농약 검사, 원산지 단속 등 정밀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경비와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⑤ "을"은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품목을 즉시 회수 폐기 처분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며, "을"은 해당 품목을 생산 또는 공급한 농가(업체)의 명단을 "갑"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감독 등)

- ① "갑"은 "을"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여부 및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 점검, 안전성 검사 및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을"은

“갑”의 조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현지 지도단속 및 점검 시 관련 서류와 자료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하며, “갑”이 개선 요구 시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고, 검사 및 단속 결과 증빙에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공모 시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기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보관, 관리)

- ① “을”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반출 혹은 본 업무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및 관련 자료가 누출되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적, 민형사상, 배상 등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4조(성과의 귀속)

- ① 위탁업무를 함으로써 얻어진 노하우 등의 성과는 모두 “갑”에게 귀속해야 한다.
- ② “을”은 “갑”에게 성과와 실적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갑이 요구하는 성과 및 실적 데이터 그 밖의 요구 자료를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성과의 평가)

- ①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사업 정산과 운영 전반에 관한 거래 재무상태 대차 대조표를 제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대금청구 및 지급)

- ① “을”은 지원대상자가 발급한 월별 공급사실 확인서와 “을”이 작성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내역서를 첨부한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서와 지원대상자의 정산서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후에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 ② "갑" 또는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은 납품받은 식재료의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을"이 식재료 수급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영농조합이나 농가, 업체 등에서 물품대금 미지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당해 영농조합이나 농가, 업체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이행불능의 통보) "을"은 계약상의 납품기간 내에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갑"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가입) "을"은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최소 1 사고 당 5억 원 이상, 1인당 1억 원 이상 보상한도)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②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에게 공급한 식재료의 비용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급업체"가 공급한 식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학교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급식 지원대상 시설별 월 2회 이상 또는 연 4회 이상 "식재료 부적합품 확인서([붙임 1])"를 징구 받은 경우
 - 2. "지원대상자"가 납품요청 한 식재료를 납품기간 내에 연 3회 이상 공급을 하지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로 공급한 경우
 - 4. 타도산 친환경농산물을 전남산 친환경농산물로 허위로 공급한 경우
 - 5.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을 여수산 친환경농산물 단가로 "갑"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 공급한 경우
 - 6. "갑"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원산지 표시 또는 안전성 검사 결과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제출한 경우
 - 7. "을"이 자격 또는 면허를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8. 본 계약 사항과 관련 법규에 의하여 결정된 공급 품목, 공급 단가 등에 대하여 "갑"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9. 제21조에 의거 이뤄진 경고 처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 기타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2항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은 향후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나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수의 단체 또는 법인이 지원단, 연합 법인 등을 구성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 해지 책임이 있는 법인이 참여 제한 제재를 받음)
 - ⑤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사유 및 제11조에 의한 잔류농약 검출 식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식재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지급대상자에게 공급한 식재료의 비용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책임한계)

- ① “을”이 납품한 식재료를 취식한 후 취식자가 식재료로 인하여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을”은 지원대상자와 피해자에게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을”은 납품한 식재료의 안전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③ 식재료 공급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전적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④ 계약기간 중 “을”이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계약 이행 감독)

-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점검, 식재료 검수, 잔류농약 검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감독권을 행사하여,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감독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갑”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서의 계약 사항 및 "을"이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공모 시 제출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 세부사업계획"을 불이행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 소명 절차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을"은 경고 처분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 시, 경고 처분 적정성에 관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경우 또는 2) "갑"이 경고 처분 사항에 대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경고 처분 사항을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은 심의 의결 사항을 따른다.
 - 경고 처분을 위탁 계약 기간 중 2회 이상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이나 공급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다수의 단체 또는 법인이 지원단, 연합 법인 등을 구성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경고 처분의 책임이 있는 법인이 제재를 받음)

제22조(기타)

- ① "을"은 여수시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와 상호 상생발전을 위하여 "갑"이 요구한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 ② "을"은 "갑"이 추구하는 시정 방침에 맞도록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생산자(생산자 단체 포함)와의 계약재배를 확대 실시토록 노력해야 한다.
- ③ "을"은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관련 "단독 회계 관리"하고 재무재표 등 회계 자료를 매년 1월 31일 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 "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매입·매출·손익 내역, **판매 관리비 내역** 1)을 결산 관리하고 해당 자료도, 매년 1월 31일 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 1) 인건비, 유류비, 저장비, 감가상각비, 운영 경비, 기타 비용 *
- * "운영 경비, 기타 비용"는 상세 내역 관리
- ④ 급식 지원 시설, 학교급식지원센터 납품 농가·법인·업체를 대상으로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만족도 조사([붙임 2])"를 년 1회 실시하여 그 평점 평균이 60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본 계약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3조(비상 상황 대응)

- ① 천재지변, 화재, 질병,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 계약 기간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설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위탁사업자 "을"은 공모 신청 시 위탁 운영 세부사업계획서 상 수립 제출한 자체 비상 대응 계획과 "갑"의 지시사항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한다.
- ② "갑"은 위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을"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수행치 않거나 수행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을"에게 통보 후 직권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업무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행자(이하 "병")를 지정 급식 업무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않고 "갑"에게 적극 협조한다.
- ③ 비상 상황 시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 선금급을 반납하지 않고 관리할 경우, "을"과 "병"(비상 상황 시 위탁 업무 대행자)이 대금 지급을 수반하는 계약 거래가 필요할 시, "갑"의 사전 승인 및 감독과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행정사항)

- ① "을"은 식재료 잔류농약 속성검사 및 정밀검사 현황은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을"은 품목별 공급실적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④ "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 협동조합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를 협의 조정하고 주요 현안업무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⑤ 우리 지역 생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추진 시, 계약재배 농가 배정량 등에 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중재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주체로 구성된 계약재배 농가 협의체에서 농가 협의 조정이 불가하고, 농가 협의체 협의 결과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조정을 희망 할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건에 대하여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가와 협의 하에 상호 약정 의무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1. 약정 의무 필수 포함 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무 사항

- 계약재배 및 추가 매입 가능 물량 기재
- 매입 약정가 또는 매입가 결정 방법 기재
- 동일 품목 추가 계약재배 농가 모집 시, 기존 계약재배 농가와 사전 협의 및 동의 후 진행

- 계약재배 농가 의무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사전 협의 후 계약재배 계약 해지 없이, 물량 납품 가능하나 고의적으로 계약재배 물량 납품치 않을 경우 제재 사항 기재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 농가 협의 하에 표준계약서 서식 마련

2. "을"은 "표준계약서(안)"을 작성 후 2023년 10월 30일 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갑"정하는 기한까지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을"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직거래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농산물 조달과 여수산 잉여생산물 판로 확대관련, 제5차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 후 여수시와 협조하여, 2024년부터 도내산 친환경농산물 판매차익 등을 지원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한다.

⑧ "을"은 여수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제4조(식재료 취급범위) 해당 품목 매출액 중, "이행각서"에서 확약한 비율만큼 지정기부금을 적립 여수시에 환원하고, 세부사항은 여수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사회 환원 기부금 적립 차등 기준]

- 여수산) 매출액의 _____%, 도내산) 매출액의 _____%

[특약사항]

①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급식 추진을 위하여 본 계약의 공급방법이나 지원대상자의 공급업체 결정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사업자 만족도 조사표

[급식 지원 시설용]

※ 해당사항에 ○표 하세요.

구분	항목	만족도 척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 만족 (5점)
식재료	위생 상태					
	신선도 및 품질					
	포장 및 외관 상태					
	사양 및 규격 준수					
	수량 및 중량 정확성					
	품목 추가 요청 반영도					
	식재료 전체 만족도					
배 송	배송 시간 준수					
	배송 차량 위생(차량 청소 상태, 차량 온도 및 표기 등)					
	배송 직원 위생 상태 (위생복 및 위생모 착용상태 등)					
	배송 직원 친절도					
	반품 및 교환 용이성					
	배송 전체 만족도					
서비스	반품 후 재 납품 품질 상태					
	원산지 및 인증 표시사항 준수					
	검수자 지시사항 이행도					
	시정서, 확인서 작성 협조					
	전화 상담 친절도					
	불편(민원)사항 처리 협조도					
	위탁 업체 서비스 전체 만족도					
기타 의견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사업자 만족도 조사표

[지역 농산물 납품 농가 · 법인용]

※ 해당사항에 ○표 하세요.

항목	만족도 척도				
	매우 불만족 (1점)	불만족 (3점)	보통 (5점)	만족 (8점)	매우 만족 (10점)
계약재배 체결 시, 농가 의견 반영도					
계약재배 물량 농가 배정 및 확정 시, 중재 등 협의 의지					
계약재배 잉여 생산물 매입 만족도					
계약재배 품목 재배 상황 점검 만족도					
여수산 계약재배 품목 및 급식 납품량 확대 의지					
농가 매입 가격 적정성					
운영 수수료(농가 매입가 - 급식 납품가) 책정 적정성					
안정성 검사 이행도					
급식 납품가 결정 위한, 시장 가격 조사 만족도					
불편(민원)사항 처리 시 친절 · 협조도					
* 기타의견 :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사업자 만족도 조사표

[지역 식재료 납품 업체]

※ 해당사항에 ○표 하세요.

항목	만족도 척도				
	매우 불만족 (10점)	불만족 (15점)	보통 (20점)	만족 (25점)	매우 만족 (20점)
납품 가격 협의 시, 만족도					
매입 수수료 적정성 및 만족도					
납품 발주량 변경 시, 협의 등 사전 조치 사항 만족도					
납품 계약 사항 준수 만족도					
불편(민원)사항 처리 시 친절·협조도					
* 기타의견 :					

[붙임 3]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실무협의회 단가 결정용 자료 제출 서식

품목	인증 구분	납품가	매입가	원산지	30일 이상 저온 저장 여부	소분작업 여부	매입처	비고
							농가명 (연락처)	
							법인명 (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 조사 및 작성 항목 추가 가능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승인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8.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여수시장 (섬발전지원과)	남면 화태리 4-5번지 일원	남면 화태리 마죽항 방파제 정비공사	1,062.61㎡	30년
	남면 심장리 92-3번지 일원	남면 장지마을 연안시설 보강공사	780.98㎡	
	남면 심장리 976-1번지 일원	남면 미포마을 방파제 연장공사	2,293.35㎡	

2. 공람장소, 공람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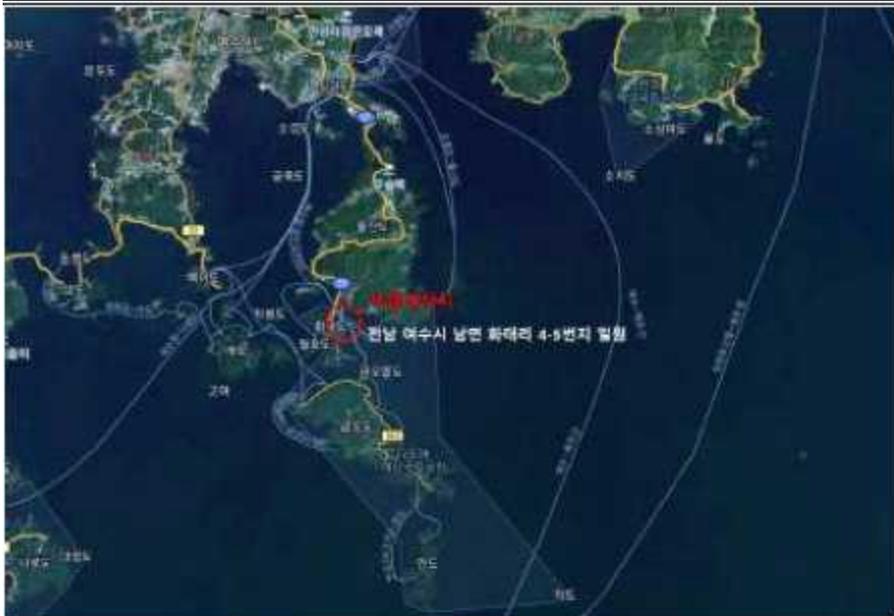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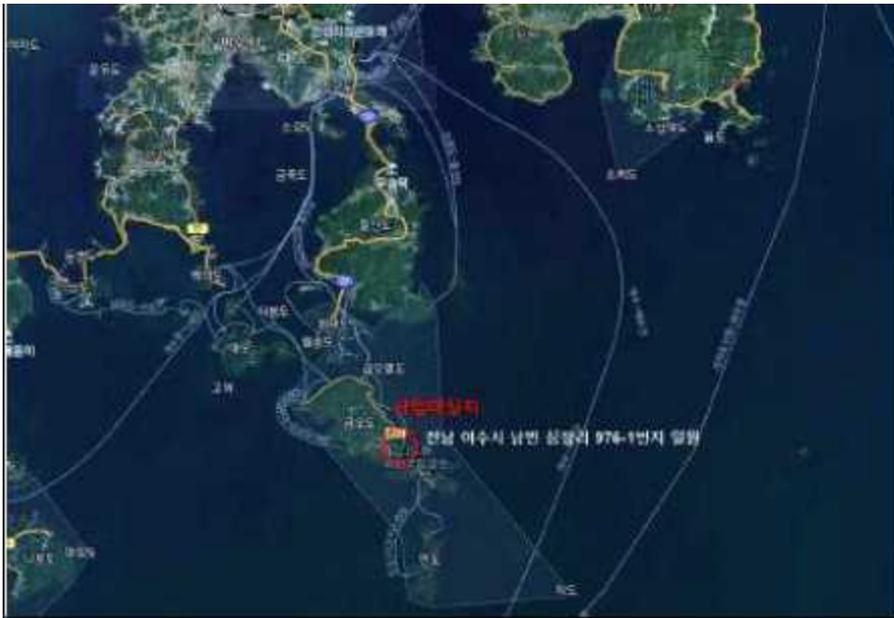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정책과
- 공람기간: 2023. 5. 8. ~ 2023. 5. 24.(17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3. 5. 8. ~ 2023. 5. 24.(17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춰 제출
- 제 출 처: 등기우편(여수시 신월로 648, 4층 해양정책과)
전자우편(chlsmile1004@korea.kr)
- 담 당 자: 공유수면관리팀 행정9급 김채린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정책과(☎659-3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의견	
	기타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여수시장(해양항만레저

과)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

면허 번호	연장 허가 번호	양식업의 종류 (양식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연장허가 기간	수산자원 조성금 (천원)	양 식 업 권 자		비고
								주 소	성 명	
11446	2023-25	패류양식 (바닥식)	10.00	화정 여자	2013.07.15. 2023.07.14. (10년)	2023.07.15. 2033.07.14. (10년)	-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감도어촌계	
11449	2023-26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5.40	돌산 군내	2013.07.16. 2023.07.15. (10년)	2023.07.16. 2033.07.15. (10년)	-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군내어촌계	
11462	2023-27	패류양식 (바닥식)	9.00	화정 여자	2013.07.30. 2023.07.29. (10년)	2023.07.30. 2033.07.29. (10년)	-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이천어촌계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3. 05. 08.

여 수 시 장